■ 참고 2 (단체 수강 신청서 예시: 장기요양기관용)

#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(단체)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① 장기요양기관명 |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| | |
|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| 2-27290-00599 | | |
| ③ 소 재 지 |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18기 10, 301호(진천동) | | |
| ④ 시설장 성명 | 윤경례 | ⑤ 교 육 일 | 2026.07.04 |
| ⑥ 교육신청 인원 | 18명 | ⑦ 전화번호 | 053.268.5822 |
| | | 담당자휴대폰 | 010.2882.5822 |

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신청합니다.

2026 년 02 월 27 일

신청인(장기요양기관의 장) 윤 경 례 (서명 또는 인)

(사)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
대 구 광 역 시 지 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귀중

☑교육인원 미달시 사전통보후 교육일정이 연기 될수있음을 안내합니다

첨부서류
-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 1부 …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등 기재
※ 교육생은 교육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및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확인하여 참석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
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

# 국민건강보험공단

수신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
(경유)
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협조사항 안내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에 애써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귀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가. 주요내용

1) 교육대상 안내 및 이수 협조 요청

귀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최수 연도생 요양보호사가 2026년도 교육대상입니다.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자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

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

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(면제 대상)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※ 예시: '24년~'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

2) 단체신청 안내
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유의사항) 단체신청 시 교육실시일 이전 요양보호사의 퇴사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⇒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, 퇴사 후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므로 유의

※ 교육기관 찾기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민원서비스 > 검색서비스 >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

※ 평가매뉴얼 게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장기요양기관 > 장기요양 기관평가 > 평가 매뉴얼

3. 위 내용은 대표자 휴대전화 알림톡으로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가 오류인 경우,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시면 추후 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.

※(오류 예시) 미입력, 오류번호(01000000000), 유선번호, 017 또는 019 등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경우

4.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(이용시간 09:00~18:00). 끝.